

# [촉탁직]근로계약서

사업주(갑)	성명	이진선	사업의 종류	상품도매업
	사업체명	프레스코21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송이동 15길 33(가락동)가락2차 쌍용상가 201호		
근로자(을)	성명	서향자	직위	실장
	주소			
	생년월일			

프레스코21 (이하 “갑”이라함)과 서향자 (이하 “을”이라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제 1조 (근로계약기간 및 촉탁직 재고용)

- ① [계약기간] 본 계약은 “을”的 정년 도달(만 65세)에 따른 재고용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3년)\*\*로 한다.  
② [근로관계의 단절] 본 계약은 정년퇴직에 의해 종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고령자 고용유지 정책에 의거하여 새롭게 체결된 ‘촉탁직 재고용’ 계약임을 양 당사자는 명확히 확인한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한다.

## 제 2조(근로시간, 근로일 및 휴게)

- ① “을”的 근로시간, 근로일 및 휴게는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 09:00~ 18:00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 휴게 : 12:30~ 13:30 (업무의 특성상, 휴게 시간을 변경하거나, 분할 가능하다.)  
② 근로일 : 1주 5일(월요일~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전항의 근로시간, 근로일은 갑의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연장근로 동의] 업무의 특성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하고 제4조에 명시된 포괄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다.  
(인) \_\_\_\_\_

## 제 3조(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 ① 담당업무는 생산 및 관리로 한다.  
② 근무장소는 본사 사무실로 한다.  
③ 전항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는 업무상 필요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 (인) \_\_\_\_\_

## 제 4조(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구분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근로수당	월지급액
단위(원)	2,104,790	200,000	495,210	2,800,000
월통상임금시간: 209시간(주휴시간포함)/월		30시간/월		

- ① “을”的 임금은 다음과 같이 포괄산정방식에 의하여 구성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인) \_\_\_\_\_  
② [포괄산정 범위] 월지급 합계액에는 월 30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월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한 법정 수당을 별

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월지급액에서 공제액(4대보험, 제세공과금 등)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④ 임금 산정기간은 당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로 하며, 익월 21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 5조(휴일 및 휴가)

① 을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업무상 필요시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③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휴일은 유급휴일이다.

⑤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다.

## 제 6조(근태사항, 중도퇴사자 및 인수인계)

①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사시 최소한 30일 이전에 대표자에게 사전통보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퇴직일까지 성실히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업무인수인계 불충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 제 7조 (계약 해지)

①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채용된 경우

②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③ 신체조건, 기타 사유로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④ 회사의 경영상의 위기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제 8조(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① 갑의 영업비밀 (거래처명, 거래처 개인정보, 거래처별 매출액, 영업 Know-how, 기술적 Know-how, 작업방법 및 기술에 관련된 모든 사항. 마케팅 방법, 제품 구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 지적 재산권의 모든 사항 및 Know-how, 회사의 모든 정보, 수입처 등 영업비밀은 어떤 형태나 형식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업무상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한다)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갑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나 경쟁사에게 누설(어떤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다.)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성명 서 향 자 (인)

② 계약종료 내지는 계약의 중도해지 후 만 1년 동안은 동종업계나 타회사에 전직 또는 창업 (본인 명의나 또는 타인 명의로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겠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서 향 자

(인)

## 제 9조 (경영성과급 특약)

① [지급 근거] 회사는 경영 실적 및 근로자의 기여도(연장근로 협조 등)를 고려하여 **비정기적**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은혜적 금원] 본 성과급은 지급 여부, 시기, 금액이 전적으로 회사의 경영판단 및 재량

에 의해 결정되는 은혜적·호의적 성격의 금원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평균임금 제외] 본 성과급은 고정적·일률적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합의한다. (인) \_\_\_\_\_

## 제 10조 (기타 및 특약사항 )

-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법, 관련 법령, 취업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며 동의한다

② 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후에 정히 본 계약서를 교부받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인)

③ 근로자는 상기 계약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인)

④ 기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본 계약서로 대체된다. (인)

2025년 11월 21일

사업주(갑): 프레스코21 대표자  
이진선 (서명)  
근로자(을): 서향자 (서명)